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41
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16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출일 : 2022년 10월 17일

다. 회부일 : 2022년 10월 21일

라. 상정일 :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
2022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,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민참여 활성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(안 제1조 및 제16조)
- 2) 위원의 직무에 「청원법」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(안 제7조)

3)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 및 구성 인원 100명 이내로 확대(안 제25조)

4) 법률자문단 구성·운영하여 시민의 감사 등 참여 활성화(안 제2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원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미대상).

다. 입법예고('22. 9. 1.~9. 21.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*에 따른 인용조문의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(안 제1조, 안 제16조)하고,

* 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전부개정, 2022. 1. 13. 시행

-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(이하 “옴부즈만위원회”) 위원의 직무 범위에 「청원법」의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·처리 업무를 신설 추가(안 제7조, 안 제24조)하며,
-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및 활동 분야를 확대(안 제25조)*하고, 옴부즈만위원회의 법률자문단 구성·운영 사항을 신설(안 제26조) 하려는 것임.

* 6개 분야 35명 이내의 시민참여옴부즈만을 10개 분야 100명 이내로 확대위촉

가.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(안 제1조, 안 제16조)

- 안 제1조와 안 제16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감사청구심의회’의 근거 인용조문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6조가 제25조로 이동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(대통령령 제32223호, 2021. 12. 16., 전부개정, 2022. 1. 13. 시행)

◇ 제·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2.1.13. 시행)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,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 추진
-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‘주민자치’ 원리 강화
- 국가-자치단체, 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본관계가 협력관계임을 명시

종 전	현 행
제26조 (감사청구심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	제25조 (감사청구심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감사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의 소속으로

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 <u>심의회</u> ”라 한다)를 둔다. (이하 생략)	감사청구심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 <u>감사청구심의회</u> ”라 한다)를 둔다. (이하 생략)
---	---

<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(인용조문 이동 반영) >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26조</u> 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25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조(감사청구심의회 설치 및 기능)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(이하 “ <u>심의회</u> ”라 한다)를 둔다. 1. ~ 4. (생략)	제16조(감사청구심의회 설치 및 기능) ----- <u>제25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~ 4. (현행과 같음)

○ 다만, 본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2021. 12.16.) 후 1년 가까이 경과하고 나서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 지연에 따른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나. 읍부즈만위원회 위원 직무에 청원의 조사·처리 사무 추가(안 제7조, 안 제24조)

- 안 제7조와 안 제24조는 읍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 범위에 「청원법」에 따른 ‘청원사항’에 대한 조사·처리를 신설하여 추가하려는 것임.

< 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(위원 직무 추가(청원) 관련) 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단서 신설></p>	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청원법」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
<p>제24조(직권에 의한 감사) ① 위원은 시민·주민감사, 고충민원의 <u>조사·처리</u>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4조(직권에 의한 감사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조사·처리, 청원의 조사·처리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청원은 「헌법*」 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, 「청원법**」에서는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

* 「헌법」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

** 「청원법」 (법률 제17701호, 2020. 12. 22., 전부개정, 2021. 12. 23. 시행)

제4조(청원기관)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(이하 “청원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과 그 소속 기관
2.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
3.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- 청원사항*은 피해 구제, 공무원의 위법·부당 행위 시정·징계 요구, 법률·명령·조례·규칙 등 제·개정 또는 폐지, 공공 제도 또는 시설 운영,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.

「청원법」 (법률 제17701호, 2020. 12. 22., 전부개정, 2021. 12. 23. 시행)

제5조(*청원사항)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.

1. 피해의 구제
2. 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
3. 법률·명령·조례·규칙 등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4.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
5.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- 서울특별시장은 청원 제도의 총괄 및 청원심의회 구성·운영 사항을 옴부즈만위원회 사무로 분장*(2022.7.22.)하고,

*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

(서울특별시규칙 제4490호, 2022.7.22., 일부개정, 시행)

제144조(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)

① ~ ③ (생략)

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2.7.22>

1. ~ 10. (생략)

11. 청원 접수, 조사 등 청원 제도 총괄

12. 청원심의회 구성·운영

[142조에서 이동, 종전 제144조는 제146조로 이동 <2022.8.18.>]

- 「청원법」(제8조)에 근거하여 「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(2022.10.17.)**하여 옴부즈만위원회를 청원심의회 등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로 규정하였으며,

「청원법」(법률 제17701호, 2020. 12. 22., 전부개정, 2021. 12. 23. 시행)

제8조(청원심의회)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(이하 "청원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2.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
② 청원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 「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
(서울특별시훈령 제1042호, 2022. 10. 17., 제정,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주관부서"란 「청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.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관부서이다.

- 지난 2022년 11월 10일 “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”를 구성(7명, 위원장 포함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3명, 외부 4명 위촉)한바 있음.

□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

(근거: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
○ 청원심의회 구성

- 위원장 :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(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)
- 위원 : 5 ~ 7명(외부위원 1 / 2 이상)
 - ※ 외부위원 :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
 - ※ 내부위원 :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
- 임기 : 2년(외부, 한 차례만 연임 가능)

○ 청원심의회 주요기능

-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,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,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

- 다만, 본 조례(제7조)에서는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, 그 직무를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,

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위원의 직무)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1. 제12조의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
2. 제15조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
3.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·중재
4. 제21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
5.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
6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
7.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(이하 "감사위원회"라 한다)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

- 본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3명(위원장 포함)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미리 확대한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“청원사항의 처리” 사업 2023년도 신규 편성예산: 2천 4백만원

□ 2023년 소요예산 : 총 24,300천원(사무관리비)

〈예산사업설명서〉

과목구분	2023년 예산(안)	
사무관리비	○ 청원심의회 운영	= 19,200천원
	- 회의참석 수당 200,000원*4명*16회	= 12,800천원
	- 자료검토 수당 100,000원*4명*16회	= 6,400천원
	○ 청원사항 조사 등 외부전문가 법률자문	= 3,000천원
	- 법률자문 수당 등 200,000원*3명*5회	= 3,000천원
	○ 청원심의회 위원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	= 2,100천원
	-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 수당200,000원*4명*2회	= 1,600천원
	- 소모품 구입비 등 250,000원*2회	= 500천원
	증감사유	
	- 청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필요	

○ 한편,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3항을 통해 ‘시의회에 관한 사항’ 등 ombudsman위원회 위원의 직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(현행 제1호부터 제6호)에 더하여,

- 본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직무로 추가(안 제7조제2항제8호, 청원법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)된 사항이 청원법 제6조의 국가의 기밀 관련 사항 등 청원 처리의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또한 위원 직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나,

〈 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(위원 직무 추가(청원)) 〉

현	행	개	정	안
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생략)		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		② -----		

현행	개정안
<p>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단서 신설>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청원법」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

-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의 의결 주문에 따를 경우,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의 위원의 직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‘시의회에 관한 사항’ 등 각 호의 6개 사항이,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, 위원의 조사 대상에 포함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바 수정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(옴부즈만위원회 동의 필).

< 개정 의결주문 및 신·구조문대비표 수정의견 >

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발췌

의결 주문	
제출안	수정의견
<p>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</p>	<p>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</p>

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< 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(위원 직무 추가(청원)) 관련 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시의회에 관한 사항</p> <p>2. 행정심판,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</p> <p>3.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</p>	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청원법」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사항. 다만,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. 검찰·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. 법령에 따라 화해·알선·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 확정된 사항 6.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		

다.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및 활동 분야 확대(안 제25조)

- 안 제25조는 현행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인원 및 활동 분야와 관련하여 현행 6개 분야 35명 이내의 구성 요건을 10개분야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

<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) ① (생략)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<u>여성복지, 도시안전, 산업경제(생활환경), 도시교</u>	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복지정책, 도시안전, 도시계획, 주택정책, 산업경제,</u>

현행	개정안
<p>통(도시계획), 교육문화, 일반행정의 6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성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p> <p><단서 신설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문화관광, 기후환경, 도시교통, 보건 의료, 행정자치 등 10개 분야 총 100명 ----- ----- . 다만,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○ 읍부즈만위원회는 시민참여읍부즈만이 공공사업 감시 및 시정 참여를 통해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 등 정책 제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인력 부족으로 활동이 특정분야 편중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원 및 활동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- 이에 따른 수당 등 예상 소요액은 2022년 예산(9천만원) 대비 219.4%(1억 9천 9백만원) 증액된 2억 8천 9백만원 수준*으로 추계하고 있음.

* 2023년 예산: 35명에 대한 예산(152백만원)만 편성한 상태임(조례 개정 전 기준 편성)

< 2023년 예산안 반영안 >

- 시민참여읍부즈만위원 확대에 따른 예산안 증액 반영 -

구분	2022년 예산	2023년 요구예산(A)	2023년 추가 요구예산(B)	증감 (B-A)
계	90,600	152,000	289,400	137,400
사무 관리비	90,600	140,000	271,400	131,400
	○ 공공사업 감시활동 수당 200,000원*35명*10회= 70,000천원	○ 공공사업 감시활동 수당 200,000원*35명*15회= 105,000	○ 공공사업 감시활동 수당 200,000원*100명*10회= 200,000	95,000
	○ 시민참여읍부즈만 운영 20,600천원	○ 시민참여읍부즈만 운영 20,600천원 - 간담회 등 참석수당 200,000원*35명*4회*70% = 19,600천원 - 현수막 등 소모품비 1,000천원	○ 시민참여읍부즈만 운영 57,000천원 - 간담회 등 참석수당 200,000원*100명*4회*70% = 56,000천원 - 현수막 등 소모품비 1,000천원	36,400
		○ 법률자문수당	○ 법률자문수당	-

구분	2022년 예산	2023년 요구예산(A)	2023년 추가 요구예산(B)	증감 (B-A)
		200,000원*3명*24회= 14,400천원	200,000원*3명*24회= 14,400천원	
시책 추진 업무추진비	12,000	12,000	18,000	6,000

※ 출처: 정보공개시스템,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확대 계획(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-26984 (2022.8.22.))

○ 다만, 2021년도 1년간 시민참여옴부즈만(35명)의 활동실적을 보면, “참관” 등 옴부즈만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1인당 연 9.7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,

- 인력부족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- 과도한 인원 확대에 인하여 활동 실적 없이 ‘명함 기재용 경력 만들기’로 본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※ 참여자 35명, 참여실적 348건(참관 259, 중점감시 51, 감사 18, 고충민원 18, 민원 배심제 2)

2021년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실적 (2021.12.31.기준)

연번	성명	성별	계	공공사업		감 사	고충민원	민원배심 제
				참관	중점감시			
1	문○○	여	16	12	4			
2	오○○	남	11	6	1	2	2	
3	이○○	여	11	7	4			
4	강○○	여	11	9	2			
5	정○○	여	8	6	2			
6	유○○	여	6	4	1			1
7	김○○	남	15	12	3			
8	황○○	남	11	2		5	4	
9	조○○	남	13	8	5			
10	나○○	남	11	5	6			
11	김○○	남	9	9				
12	정○○	남	7	4		1	2	
13	박○○	남	7	5	2			

연번	성명	성별	계	공공사업		감 사	고충민원	민원배심 제
				참관	중점감시			
14	신○○	남	8	8				
15	우○○	남	8	6	1	1		
16	최○○	남	9	8	1			
17	신○○	여	18	9	1	2	5	1
18	한○○	남	12	11	1			
19	유○○	남	3	3				
20	백○○	여	14	12	2			
21	서○○	남	8	8				
22	송○○	여	9	8	1			
23	정○○	남	11	7	1		3	
24	오○○	여	8	7	1			
25	김○○	남	8	3	3	2		
26	차○○	여	6	6				
27	박○○	여	9	7	1	1		
28	하○○	남	5	4	1			
29	황○○	남	9	9				
30	진○○	남	5	5				
31	김○○	여	16	15	1			
32	오○○	여	4	3	1			
33	권○○	남	9	7	2			
34	최○○	남	10	8	2			
35	채○○	여	7	6	1			
前 참여옴부즈만			16	10		4	2	
총계	35명		348	259	51	18(8건)	18(6건)	2(1건)

출처: 2022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490쪽

라. 법률자문단 구성·운영(안 제26조)

- 안 제26조는 고충민원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 및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」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임.

<본 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시민의 감사 등 참여) <u>위원</u> 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	제26조(시민의 감사 등 참여) <u>위원회</u> 는 -----

현행	개정안
<p>· 조사·감시 활동을 함에 있어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</u> <u>옴부즈만</u>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.</p>	<p>----- <u>법률자문</u> <u>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</u> <u>요한</u> ----- -----.</p>

- 옴부즈만위원회는 민원 및 감사청구 내용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, 감사청구 결과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옴부즈만위원회는 그동안 감사, 조사,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 옴부즈만과 분야별 전문가 등 참여를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해 왔으며, 법률자문단 운영에 따라 자문 건수 확대가 예상되어 각 사업별(“고충민원 조사 처리”, “공공사업 감시·평가”)로 나누어 예산에 자문수당(사무관리비)을 편성하고 있음.

※ 고충민원 조사 처리: 22,200천원, 공공사업 감시 평가: 14,400천원

<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계획>

□ **구성 방안**

- 구 성 : 35명(비상근) ※ 향후 50명 이내에서 추가 구성 가능
 -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,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
- 임 기 : 2년 (연임 가능)
- 기능 및 역할 : 감사·고충민원조사 관련 분야별 법률자문

□ **운영 방안**

- 고충민원 및 감사 과정에서 자문위원별 분야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의뢰
 -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
- 법률자문료 지급 기준

- 1건당 200천원(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) 지급

※ 「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고문료 등), 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 제27조(수당 등 지급)

- 다만, 옴부즈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법률자문단 35명에 대한 위촉식을 마치고, 9월에 추가로 11명을 위촉하여 총 46명의 법률자문단을 위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(뉴시스 2022.9.26.),
 - 옴부즈만위원회는 비록 법률자문단 구성이 조례에 필요적 근거가 요구되는 위원회 성격의 조직이 아닌 인력풀 개념의 구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,
 -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위촉을 마쳤는바,
 - 지속적으로 절차적 적정성을 외면한 옴부즈만위원회의 성급한 업무추진 형태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
다. 기타 (부칙)

-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(제1조), 경과조치(제2조)를 규정하고 있음.
 - 안 부칙 제1조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, 상위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이 지연된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여 법체계와의 체계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 - 부칙 안 제2조는 본 개정안에 따른 법률자문단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부터 운영해온 법률자문단과의 입법 효과에 대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법률자문단 지위 유지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.

본 개정조례안 부칙(안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가 구성하여 운영 중인 법률자문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법률자문단으로 본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지시문에 따를 경우, 개정 취지와 다르게,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7조제3항의 각 호가 삭제되는 오류를 방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옴부즈만 위원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본 조례 제7조제3항의 각 호와 안 제7조제2항제8호의 청원사항으로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 개정지시문을 수정함.

8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341
----------	------------

2022년 12월 16일
행정 자 치 위 원 장

1. 수정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지시문에 따를 경우, 개정 취지와 다르게,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직무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 제7조제3항의 각 호가 삭제되는 오류를 방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옴부즈만 위원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본 조례 제7조제3항의 각 호와 안 제7조제2항제8호의 청원사항으로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 개정지시문을 수정함.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 개정지시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
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
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
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수정안 개정지시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u>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 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	<p><u>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u>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</p> <p>1. 제12조의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</p> <p>2. 제15조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</p> <p>3.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·중재</p> <p>4. 제21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</p>	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5.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</p> <p>6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</p> <p>7.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(이하 "감사위원회"라 한다)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시의회에 관한 사항</p> <p>2. 행정심판,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</p> <p>3.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. 다만,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</p>	<p>8. 「청원법」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</p> <p>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<u>1. ~ 6. <삭제></u></p>	<p>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③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<u>1. ~ 6. (현행과 같음)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4. 검찰·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</p> <p>5. 법령에 따라 화해·알선·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 확정된 사항</p> <p>6.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</p>		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청원법」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
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
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
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6조”를 “제25조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조사·처리”를 “조사·처리, 청원의 조사·처리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여성복지, 도시안전, 산업경제(생활환경), 도시교통(도시계획), 교육문화, 일반행정의 6개”를 “복지정책, 도시안전, 도시계획, 주택정책, 산업경제, 문화관광, 기후환경, 도시교통, 보건의료, 행정자치 등 10개”로, “35명”을 “100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6조 중 “위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을 “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가 구성하여 운영 중인 법률자문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법률자문단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26조</u>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</u> <u>시행령 제2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청원법」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</p> <p>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16조(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)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24조(직권에 의한 감사) ① 위원은 시민·주민감사, 고충민원의 <u>조사·처리</u>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·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<u>여성복지, 도시안전, 산업경제(생활환경), 도</u></p>	<p><u>의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,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「청원법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 <u>제2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직권에 의한 감사) ① --- ----- -----<u>조사·처리, 청원의 조사·처리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복지정책, 도시안전, 도시계획, 주택정책, 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시교통(도시계획), 교육문화, 일반 행정의 6개 분야 총 35명 이내로 성별,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26조(시민의 감사 등 참여) 위원 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·조사·감시 활동을 함에 있 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.</p>	<p>업경제, 문화관광, 기후환경, 도시 교통, 보건의료, 행정자치 등 10개 분야 총 100명 ----- ----- . 다만,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(시민의 감사 등 참여) <u>위원 회는</u> ----- ----- - <u>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